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54
----------	-----

2023. 10. 16.

행정재경위원회
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기 타
 -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 - 입법예고(2023. 8. 25. ~ 9. 14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 -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 - 부패영향평가 : 특기사항 없음
 - 성별영향분석평가 : 분석평가지 특기할 사항 없음(분석평가 완료)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9. 27. 강남구청장(스마트정보과)
- 나. 상정의결
 -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(2023. 10. 16.)
“수정가결”

2. 제안설명 요지(미래문화국장 : 문경수)

- 가. 제안이유
 - 정보화교실 참여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및 관련행사 개최, 기념품 지급 및 상장 수여 근거를 마련하고, 「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개정에 발맞추어 다자녀 가족 수강료 감면 확대를 통해 저출산 시대 대응 및 정보화교실 수강생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
- 나. 주요내용
 - 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및 상장 수여 조항 신설(안 제13조)
 - 다자녀 가족 지원을 위한 수강료 무료 대상(중전의 ‘세 자녀’ 에서 ‘두 자녀’ 로 개정) 확대(안 별표)
- 다. 참고사항
 - 관계법령 :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50조, 「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조성수)

- 현행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기본 조례」 제29조(정보화교육)와 관련하여 시행되는 조례로 본 조례의 목적은 강남구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정보이용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화교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반영한 조례임.
 -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1조(수강료)제1항 중 “별표”의 수강료 무료 대상자 정비와 안 제13조(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) 신설과 관련된 것임.
- 제11조제1항의 별표 내용 중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소지한 세 자녀 및 두 자녀 가정에 대한 정보화교실 수강료 “무료” 규정을 반영하였는데,
 - 제출안의 내용을 두 자녀 및 세 자녀 구분 없이 두 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통합한 문구로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.
 - 또한 “(유효기간 무관)” 표기는 다소 혼동을 줄 수 있어 조정이 필요함.
 - 물론, 막내 자녀가 18세를 넘어서면 카드 효력이 없어 유효기간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조례 소비자인 주민의 직관적 이해에 혼동을 주거나 실무현장에서 부가적 설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최소화해야 할 것임.
- 안 제13조제1항은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및 관련 행사 등의 참여자에게 통상적인 기념품 등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, 직무상 금품제공 행위 등을 감안할 경우, 다소 현실 행정과 부합하는 구체적인 내용 정비가 필요함.
 - 안 제2항은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상장을

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

수 정 안

- 수여하는 내용인데, 심사 기준 등을 제시하는 규정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.
- 참고사항으로 행정동 정보화교육 65개 강좌 민간위탁금은 703,196천원임. 일반적으로 동 정보화교육은 협상에 의한 용역계약으로 추진이 현실적임.
 - 본 조례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사무위탁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향후 행정 현실에 맞는 신중한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- 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- 5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- 6. 심사결과 : “수정가결”
- 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-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- 붙임 1.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2.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

관련의안번호

제254호

제안일자 : 2023.10.16.

제안자 : 행정재경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별표 개정 조문을 간소화하고, 신설된 조문의 구체적 내용 정비 및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

2. 수정주요내용

- 수강료 무료 대상의 문구 간소화(안 제11조제1항의 별표)
- 기념품 지급 근거의 구체적인 내용 정비(안 제13조)

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3조제1항 중 “관련”을 “홍보 체험”으로, “행사 참여자”를 “경진대회 및 홍보 체험 행사에 참여한 사람”으로, “기념품”을 “홍보물품 또는 상품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경진대회 및 관련 행사”를 “경진대회”로, “상장을 수여”를 “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(부상의 수여는 제외한다)”으로 한다.

[별표]는 별지와 같이 수정한다.

[별표]

지역정보화교실 수강료(제11조제1항 관련)

수강료	단위	대 상
15,000원	1개 과정 월 20시간 이상 (월 20시간 미만 과정은 시간에 비례)	일 반
7,500원		전업주부
무 료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「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」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·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·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·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·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·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한 두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(막내 자녀 18세까지) ·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신 설>	<p>제13조(정보화교육 활성화 화를 위한 행사 개최) ① 구청장은 정보화교육 참여 활성화 및 정보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구민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및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,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및 관련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.</p>	<p>제13조(정보화교육 활성화 화를 위한 행사 개최) ① 구청장은 정보화교육 참여 활성화 및 정보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구민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및 홍보 체험 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, 경진대회 및 홍보 체험 행사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품 또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②구청장은 제1항의 정보화능력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(부상의 수여는 제외한다)할 수 있다.</p>

[별표]

지역정보화교실 수강료(제11조제1항 관련)

수강료	단위	대 상
15,000원	<p>1개 과정 월 20시간 이상 (월 20시간 미만 과정은 시간에 비례)</p>	일 반
7,500원		전업주부
무 료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「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」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·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·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·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·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·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한 두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(막내 자녀 나이 18세까지) ·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(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) ① 구청장은 정보화교육 참여 활성화 및 정보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구민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및 홍보체험 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, 경진대회 및 홍보 체험 행사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품 또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정보화능력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(부상의 수여는 제외한다)을 수여할 수 있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지역정보화교실 수강료(제11조제1항 관련)

수강료	단 위	대 상
15,000원	무 료	일 반
7,500원		전업주부
		<p>1개 과정 월 20시간 이상 (월 20시간 미만 과정은 시간에 비례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「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」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·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·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·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·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·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한 두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(막내 자녀 나이 18세 까지) ·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제13조(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) ①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참여 활성화 및 정보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<u>구민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및 홍보체험 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, 경진대회 및 홍보 체험 행사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품 또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정보화능력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(부상의 수여는 제외한다)을 수여할 수 있다.</p>

신 · 구별표대비표

현 행			개 정 안		
[별표] 지역정보화교실 수강료(제11조제1항 관련)			[별표] 지역정보화교실 수강료(제11조제1항 관련)		
수강료	단 위	대 상	수강료	단 위	대 상
15,000원		일 반	15,000원		일 반
7,500원		전업주부	7,500원		전업주부
무 료	1개 과정 월 20시간 이상 (월 20시간 미만 과정은 시간에 비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」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 · 자녀들(막내자녀 13세까지) 	무 료	1개 과정 월 20시간 이상 (월 20시간 미만 과정은 시간에 비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」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한 두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(막내 자녀 나이 18세까지) ·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		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			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4조제3항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. 다만, “한시적”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.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정보화교실 수강료의 연 평균 수입은 팔백만원으로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4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

4. 작성자

- 스마트정보과 행정7급 조현진(02-3423-5312)